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1. 19. ~ 11.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묵 의원 대표발의)

의 변 안 호	제3589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오광묵 · 서정진 · 오행숙
이현재 · 장숙희 의원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의 활동 연속성을 위한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제한 완화 필요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 및 결정권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장 연임 완화(안 제10조)
 - (현행) 연임 불가 → (개정안) 1회 연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연임할 수 없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1. 1. 1일 이후 선임된 자치회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민자치회의의 장) ①~④ (생략)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없다.</u>	제10조(주민자치회의의 장)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29조(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3.]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83호, 2021. 6.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주민자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06.03>

1. 인구 3만 이상인 지역이거나 도농복합지역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순천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1.06.03>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람
4.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사람

제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장 추천 : 2명 이내(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
2. 관내 각급 학교·기관 및 단체 추천 : 2명 이내(단,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위 발생 시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원의 6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동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 사업장,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각각 1인을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총원의 40퍼센트 이내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선정, 추첨,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께위 시 2개월 이내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사무장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장,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공공성 확보
3. 순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신 계승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4.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 중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세 환원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
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연임은 제9조의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절차를 따르되, 한번만 추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 기간이 만료 된 위원의 경우 제9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0.10.05>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21.06.03>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588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서정진 의원

1. 개정이유

- 문구를 조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문구를 조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 (안 제12조제1항)
- 기증자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의 확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문구 일부를 삭제함. (안 제12조제3항)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항 중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등록자”를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u>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등록자에게</u>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1. ~ 19.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u> <u>서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u>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 ----- <u>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u>----- -----. 1. ~ 19. (생략) ② (생략) ③ ----- ----- <u>사람으로 한다.</u>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서정진 의원,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장 (협의)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를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③ 시장은 그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순천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순천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이거나,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01.06, 2014.03.07, 2014.07.31, 2014.09.11, 2014.12.31, 2015.12.31>

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감면
2.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3.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4.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6.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시설의 우선이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7.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및 화장장 사용료 30% 감면
8.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할인

9.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1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11.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3.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
 1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장료 50퍼센트 감면
 17.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8.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 ② 제1항 제7호의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홍보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공익광고와 홍보 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4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31조(비밀의 유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3.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 · 연골 · 근막 · 피부 · 양막 · 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 · 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 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은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혼란 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에 따라 전부 개정함
- 기념일 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 휴가 최소 사용 일수 부여 등을 통한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및 후생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근무기강 확립,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친절·공정, 근검·절약,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당직 및 비상근무 등,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휴가기간의 초과, 국외여행,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 특별휴가 제 16조(수정 및 신설 사항)
 - 제3항 : 장기재직휴가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일수 부여
 - 제8항 : 출산장려휴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사용
 - 제9항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벨 휴가 제도 선제적 도입으로 출근이 즐거워지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 차원으로 기념일 휴가 신설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9. 15. ~ 10.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7.(여성가족과-1953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4.(기획예산실-1324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15.(순천시 공고 제2021-2124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5.(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며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일직, 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분할 사용 기준 : 1회 3일 이상 사용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9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월 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월 휴가를 위해 적립한 연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 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1]

선서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방법 및 절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 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 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 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 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1995.01.10 조례 제 30호
(일부개정) 1996.04.15 조례 제 207호
(일부개정) 1997.02.28 조례 제 254호
(일부개정) 2000.02.21 조례 제 494호
(일부개정) 2001.12.07 조례 제 616호
(일부개정) 2002.05.01 조례 제 631호
(일부개정) 2004.07.30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04.12.30 조례 제 758호
(일부개정) 2005.08.01 조례 제 805호
(일부개정) 2005.10.17 조례 제 817호 [시행일 : 2005.07.01]
(일부개정) 2006.06.30 조례 제 856호
(일부개정) 2008.12.31 조례 제1055호
(일부개정) 2010.11.15 조례 제1186호
(일부개정) 2013.09.16 조례 제1374호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547호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1655호
(일부개정) 2017.04.21 조례 제1720호
(일부개정) 2019.03.15 조례 제197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20.03.02 조례 제2094호
(일부개정) 2020.04.07 조례 제210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1>

제2조(복무선서)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11.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1.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며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15, 2005.08.01>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04.15, 개정 2017.04.1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04.15>

④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4.15, 2006.06.30>

⑤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4.21>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1996.04.15, 2017.04.2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15, 2008.12.31, 2017.04.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03.15>

[전문개정 2010.11.15]

제2장 <삭제 2010.11.15>

제13조 <삭제 2010.11.15>

제14조 <삭제 2010.11.15>

제15조 <삭제 2010.11.15>

제16조 <삭제 2010.11.15>

제16조의2 <삭제 2005.10.17>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02.28, 2004.12.30, 2019.03.15>

[시행일 : 2006.01.0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31, 2019.03.15>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0.11.15, 2020.4.7.>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공무상 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11.15>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0.11.15]

제18조의3(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반일 연가는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03.15]

제18조의4(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15]

제18조의5(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8.03.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15, 2017.04.21>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8.0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2.28>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2.28, 2017.04.21>

⑤ <삭제 2019.03.15>

⑥ <삭제 2019.03.15>

제20조 <삭제 2019.03.15>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996.04.15, 단서 개정 1997.02.28, 개정 2008.12.31, 2017.04.21, 2019.03.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서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04.2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15, 1997.02.28, 2000.02.21, 2002.05.01, 2008.12.31, 2010.11.15, 2017.04.21, 2019.03.1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04.15, 2017.04.21>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에 따른다. <개정 1996.04.15, 2000.02.21, 2001.12.07, 2008.12.31, 2020.4.7.>

③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04.15, 2000.02.21, 단서 신설 2005.10.17, 단서 삭제 2016.05.31, 개정 2017.04.21, 2020.4.7.>

[시행일 : 2006.01.0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02.21, 개정 2017.04.21, 2019.03.15>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4.15, 2000.02.21, 2017.04.21> <단서신설 2019.03.15>

⑥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는 3회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 <개정 2015.10.01, 2017.04.21, 2019.03.15>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전문개정 2013.09.16]

[시행일 : 2006.01.01]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2005.10.17, 신설 1997.02.28, 개정 2006.06.30, 2017.04.21>

[시행일 : 2006.01.01]

⑧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0.4.7.>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삭제 2020.4.7.>
4. <삭제 2020.4.7.>
5. <삭제 2020.4.7.>

⑨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2005.10.17, 신설 2008.12.31, 개정 2017.04.21>

[시행일 : 2006.01.01]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9.03.15>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09.16>

⑫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09.16> <개정 2019.03.15>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05.31, 개정 2017.04.21, 2019.03.15>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4.21, 개정 2019.03.1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에 동행하는 경우

⑮ 시장은 7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안식월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04.21>

1. 안식월 휴가는 휴일을 포함하며,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안식월 휴가는 매년 연가일수를 5~10일 적립하여 3년 후에 사용한다. 단, 해당연도 안식월 휴가를 위해 적립한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연가보상금 지급 보상일수에서 제외한다.
 3. 안식월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한다.
 4. 복무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⑯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3.15>
- ⑰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3.15>
- ⑱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3.2.>

제24조 <삭제 2010.11.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1]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력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08.0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5.08.01]

제27조 <삭제 2010.11.15>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1996.04.15, 2005.08.01,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1996.04.15,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05.08.01]

제29조 <삭제 2010.11.15>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제29조에서 이동 1996.04.15, 제2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05.08.0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05.08.01>]

부칙 <조례 제30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승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7호,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호, 199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4호, 20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6호, 2001.12.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31호, 2002.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7호, 200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58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5호, 200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7호, 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56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 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3.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547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16.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0호, 201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94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05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신규 공공시설 건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 전국 문화재 수 4위 도시 위상 제고, 유네스코 도시 구축

2. 주요내용

○ 기구변동(총괄) : +3과

구분	현행	개편	증감
총계	11국소, 53담당관·실·과소, 5전문위, 24읍면동	11국소, 56담당관·실·과소, 5전문위, 24읍면동	+3과
본청	5국, 1담당관·3실·27과·1추진단	5국, 1담당관·3실·30과·1추진단	+3과
의회	1국, 5전문위	1국, 5전문위	-
직속기관	2소(9과)	2소(9과)	-
사업소	3소(10과)	3소(10과)	-
읍면동	1읍·10면·13동	1읍·10면·13동	-

○ 기구조정 내역

구분	기구변동 내역
5급 기구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안전도시국) 공공시설과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있음 (의견조회 : 2021. 11. 1. ~ 11. 7.)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
노인 장애인과	- 과 명칭 변경 - 희망재활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보육과 → 가족보육과	반영
생태 환경과	- 과 명칭 변경 - 문화유산과 → 세계유산과 -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사무 분장 포함 요청	미반영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1. 3.(여성가족과-2278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1. 9.(기획예산실-162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관광과”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평생교육과, 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총괄, 관리

제8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여성가족과”를 “가족보육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로과”를 “도로과, 공공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7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29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28. 공공건축물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u>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u>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7. ~ 25. (생 략)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u>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u>를 둔다. ② (생 략)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u>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u>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7. ~ 34. (생 략)	제7조(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 <u>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평생교육과, 관광과</u>-----. ② -----. 1. ~ 6. (현행과 같음) <u>7.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총괄, 관리</u> <u>8. ~ 26. (현행 제7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u> 제8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 <u>노인복지과</u>----- ----- <u>장애인복지과, 가족보육과</u>-----.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 ----- <u>도로과, 공공시설과</u>-----. ② -----. 1. ~ 26. (현행과 같음) <u>27.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u> <u>28. 공공건축물 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u> <u>29. ~ 36. (현행 제27호부터 제34호까지와 같음)</u>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에 반영

- (의회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정책지원관 인력 반영
- (현안업무) 맞춤형 복지정책, 공공시설 일원화, 유네스코 도시 구축

2. 주요내용

○ (총 정원) 1,594명 → 1,623명 / * 29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594	1,623	29	29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554	1,583	29	29	-	5급 3 6급 이하 26
별정직	3	3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의견조회 : 2021. 11. 1. ~ 11. 7.)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1. 3.(여성가족과-2278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1. 9.(기획예산실-1621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94명” 을 “1,62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66명” 을 “1,588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8명” 을 “35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623	1,623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5	3	8	12	24
6급 이하 계	1,489	1,489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594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u>1,623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66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 <u>1,588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28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u>35명</u>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동
총 계	<u>1,594</u>	<u>1,594</u>					총 계	<u>1,623</u>	<u>1,623</u>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554</u>	<u>1,554</u>					일반직 계	<u>1,583</u>	<u>1,583</u>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u>79</u>	<u>32</u>	3	8	12	24	5급	<u>82</u>	<u>35</u>	3	8	12	24
6급 이하 계	<u>1,463</u>	<u>1,463</u>					6급 이하 계	<u>1,489</u>	<u>1,489</u>				
별정직 계	<u>3</u>	<u>3</u>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5급) +3과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29	-	3	26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29명	1,774,969,120	
일반직	5급	93,089,820		3명	279,269,460	30호봉
	6급	83,101,280	평균 57,526,910	26명	1,495,699,66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일반직					비고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3. 협의사항 : 해당 없음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기정(☎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송진현(☎ 749-5632)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8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1. 11. 16.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2.1.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의견 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방법 규정(안 제5조)
-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하도록 규정(안 제7조)
-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15. ~ 1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1. 4.(여성가족과-229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0. 14.(기획예산실-146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15.(순천시 공고 제2021-233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0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_____	성별 [] 대표자 남 / 여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전자우편 _____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조례 제 호

000(지자체명)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 책무) ① ○○○장(이하 “○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장 :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조례의 집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경우, 의견제출서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의견제출서”(예시)로 수정 필요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
지받을 0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
다.

※ 참고사항

- 검토 결과, 보완 요구, 이송 여부 등을 통보받을 대표자의 인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판단하여 조례로 규정함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
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
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칭)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제1항 및 제4항) 위원회 구성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참고 조례안과 같이 별도 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위원회
에서 검토(대행)하게 하거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의견제출 검토 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반영)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6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하여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 제3조제1항)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14조)
 -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팀장 → 신청사행정팀장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15. ~ 1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0. 12.(여성가족과-210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0. 5.(기획예산실-141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15.(순천시 공고 제2021-2324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사건립업무 팀장” 을 “신청사행정팀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 ----- <u>2026년 12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 ----- -----.
1. 기금운용관 : <u>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u>	1. ----- <u>신청사건립추진단장</u>
2. 기금출납원 : <u>청사건립업무 팀장</u>	2. ----- <u>신청사행정팀장</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

-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사부지 매입비, 청사 설계용역비, 건축비, 부대 경비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1까지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80,000,000	-115,000,000	-25,000,000	-25,000,000	-15,000,000	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80,000,000	115,000,000	25,000,000	25,000,000	15,000,00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2021까지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합 계	180,000,000	115,000,000	25,000,000	25,000,000	15,000,000	0
시 비 (기금전출금)	180,000,000	115,000,000	25,000,000	25,000,000	15,000,00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산 출 액 : 1,800억원(청사건립기금)
- 산출근거
 - 신청사건립부지 토지 등 보상비 : 427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통합관리 등 각종 용역비 : 147억원
 - 신청사건립공사비 : 1,146억원
 - 신청사건립 지장물 해체공사 : 56억원
 - 신청사건립사업 홍보 등 각종 부대경비 : 24억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 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신청사건립추진단 단장 오행석 (☎ 749-3912)
신청사행정팀팀장 이영희 (☎ 749-391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6.11.10 조례 제1691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92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순천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청사신축 재원이 마련 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내외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건립업무 관련 국·과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

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0.01>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691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적립·조성된 기금으로 청사가 준공되면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 명칭 수정 및 관련 조항 반영
- 상담인의 불합리한 자격요건 변경 및 근무지 제한 등의 조항 폐지

2. 주요내용

- 조례 근거 법률 조항 개정(안 제1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민원상담인 자격 기준을 법률에 맞게 정비(안 제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상담인의 자격을 행정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격 기준 삭제
- 민원상담인 근무 장소 확대(안 제5조)
 - 근무 장소를 허가민원과 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근무 장소에 따라 감독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10.15.~11. 4.)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0. 12.(여성가족과-21003)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8.(기획예산실-52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10.15.(순천시 공고 제2021-2321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민원사무처리</u> <u>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32조 <u>제4항</u> 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 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 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민원처리에</u> <u>관한 법률 시행령</u> 」 제9조제4항-- ----- ----- ----- -----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 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 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 의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 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 ----- ----- ----- ----- ----- ----- ----- ----- -. <단서 삭제>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u> <u>인</u>	<삭 제>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u> <u>한 사람</u>	<삭 제>
3.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u> <u>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u> <u>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삭 제>
4. <u>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u> <u>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u> <u>는 사람</u>	<삭 제>
5. <u>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u> <u>는 사람</u>	<삭 제>

제5조(근무) ①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허가민원과 장이 감독한다.

② 민원상담인은 허가민원과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1.10 조례 제974호

(일부개정) 2017.07.31 조례 제17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07.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 조언 등을 하는 일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4.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민원과장에게 건의

제5조(근무) ①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허가민원과장이 감독한다.

② 민원상담인은 허가민원과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 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07.31>

1.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08.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원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민원상담인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17.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개정에 따라 관련 정보공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외부전문가 비율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9조)
 - 외부전문가 비율 : 2분의 1 이상 → 3분의 2 이상
 -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 → 시민복지국장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개정(안 별표)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GB마다 800원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15. ~ 1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0. 29.(여성가족과-224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0. 14.(기획예산실-1465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15.(순천시 공고 제2021-2348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2분의 1이상” 을 “3분의 2 이상”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 을 “시민복지국장” 으로 한다.

별표 공개방법 및 수수료(사본·인화물·복제물)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③ (생략)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 ----- ----- 3분의 2 이상----- ----- . ----- ----- 시민복지국장----- ----- .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수수료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
전자파일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생략)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생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생략) ○ 사본(종이출력물)(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생략)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생략)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수수료(사본·인화물·복제물)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변경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4. 미첨부 사유

- 정보공개 수수료 연간 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허가민원과 과장 장순모(☎ 749-5505)
민원봉사팀장 박병두(☎ 749-5813)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제정) 1995.01.10 조례 제 17호
(일부개정) 1995.03.28 조례 제 140호
(전문개정) 1998.06.09 조례 제 347호
(전문개정) 2004.12.30 조례 제 759호
(일부개정) 2005.11.15 조례 제 835호
(일부개정) 2007.01.09 조례 제 90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8.06 조례 제129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136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03.25 조례 제1494호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1940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3.02 조례 제20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5.03.25>

1.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순천시(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적절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25>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시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5.03.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시민의 열람에 제공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07.30 : 제6조 제1항]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8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집행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의견청취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비공개 요청 및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25>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01.09, 2012.08.06, 2013.08.02, 2018.12.17>

⑤ 심의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03.25>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내

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④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⑤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⑥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25>

제11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03.25>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3.25>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④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⑥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3.25>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집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제13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5.03.25>

1. 비영리의 학술·공인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5.11.15>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순천시에는 수입증지로, 그 이외의 기관은 현금으로 각각 납부 한다.<개정 2015.03.25>

⑥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제14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25>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③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④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⑤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⑥ 정보공개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는 때에는 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03.25>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3.25>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03.25>

제16조(자료제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전년도 정보 공개운영실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5>

부칙 <조례 제759호, 200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2.08.0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민원복지국장"으로 한다.

· 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67호, 2013.08.0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94호, 201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생략)

24.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25.~41.(생략)

부칙 <조례 제2097호, 2020.3.2. 별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조례 존속 기한을 명시한 기존 부칙을 삭제하고, 순천 자활기금의 존속 기한을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19조 신설)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조례 존속 기한 삭제(조례 제1795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9. 30. ~ 10.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0. 12.(여성가족과-210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30.(기획예산실-139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30.(순천시 공고 제2021-2238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조례 제1795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 (생 략)</u> 부칙<조례 제1795호, 201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 치 ·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생활보 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 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 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 다. <u>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u> <u>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제19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u> <u>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u> <u>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u> 부칙<조례 제1795호, 2017. 10. 30.>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u><삭 제></u>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7.06.17 조례 제 278호
(일부개정) 1998.08.10 조례 제 362호
(일부개정) 2000.06.23 조례 제 516호
(전문개정) 2005.06.15 조례 제 802호
(일부개정) 2007.01.09 조례 제 90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08.06 조례 제1297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1510호
(일부개정) 2015.07.30 조례 제1535호
(전부개정) 2017.10.30 조례 제1795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92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7.31 조례 제2160호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3.31 조례 제2241호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순천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순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3.31>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1.3.31>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3.31>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영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개정 2021.3.31>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21.3.3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1.3.31>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1.3.31>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시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07.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795호,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07.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21.3.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고령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25참전유공자 정의를 신설하고 ‘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용어의 뜻을 각 호로 구분(안 제2조)
-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먼저 규정되도록 제3조 ‘지원대상’과 제4조 ‘지원사업’ 조문 순서 조정(안 제3조, 제4조)
-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및 시기’ 관련 호를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4항)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9. 30. ~ 10.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7.(여성가족과-1953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7.(기획예산실-1343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30.(순천시 공고 제2021-2202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6·25참전유공자”란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3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삭제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에게”를 “배우자 지원을 위해”로, “실시”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을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를 “사망위로금(제1호)”로, “지급 받은”을 “지급받는”으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을 “경우) : 1회 300,000원”으로,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자”를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로 한다.

3.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 200,000원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매년 6월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u> <u>2. “6·25참전유공자”란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를 말한다.</u>
<u>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u>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u> <u><신 설></u>	<u>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참전명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u>2.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u>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신 설>

제4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3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삭 제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제3조(지원사업) ① -----

----- 배우자
지원을 위해 ----- 시행
-----.

1.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2. 사망위로금(제1호-- 지급받는 ----- 경우) : 1회 300,000원-----

----- 아니한다-----

<u><신 설></u> 3. (생 략) ② 시장은 <u>지원대상자</u>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u><신 설></u>	3. <u>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u> : 연 200,000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u>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u> -----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u> 은 매년 6월에 지급한다.
--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6.25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연 200,000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6.25참전유공자 인원 수 310명(전남동부보훈지청 자료)을 기준으로 매년 30명씩 감소(사망 등)하는 것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250,000	-62,000	-56,000	-50,000	-44,000	-38,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50,000	62,000	56,000	50,000	44,000	3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 비	250,000	62,000	56,000	50,000	44,000	38,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2년 ~

○ 산출근거(세출 순증가액)

- (2022년) 310명 × 200,000원 × 1개월 = 62,000천원
- (2023년) 280명 × 200,000원 × 1개월 = 56,000천원
- (2024년) 250명 × 200,000원 × 1개월 = 50,000천원
- (2025년) 220명 × 200,000원 × 1개월 = 44,000천원
- (2026년) 190명 × 200,000원 × 1개월 = 38,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정 미(☎ 749-6180)
	사회복지팀장	김명순(☎ 749-622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2007.03.30 조례 제 916호 [시행일 : 2008.01.01]
(일부개정) 2010.10.04 조례 제1178호
(일부개정) 2013.05.15 조례 제1347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1385호
(일부개정) 2014.04.09 조례 제1421호
(일부개정) 2014.12.02 조례 제1465호
(일부개정) 2014.12.02 조례 제1465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8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11.18 조례 제2186호
(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22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05.15, 2014.12.2, 2017.12.29, 2021.05.0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05.15, 2014.04.09, 2017.12.29, 개정 2021.05.07>

1. 참전유공자라도 법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1.05.07>
2. <삭제 2021.05.07>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신설 2020.11.18.>

제4조(지원사업)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3.05.15, 2014.12.2, 2017.12.29>

1.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8.>
 2. 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07>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05.07>
-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5.0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05.15, 2013.12.02>

-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5>
-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15>

부칙 <조례 제916호, 2007.03.30>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8호, 2010.10.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28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예수당 65세 이상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부칙 <조례 제1347호, 2013.05.15>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13.12.0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4.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14.12.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2021.05.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박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1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7.

발 의 자 : 박종호 · 남정옥 · 서정진
의원

1. 제정이유

-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라. 인문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마.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바. 인문학 진흥 공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인문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운영에 관한 사업
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문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12조(수당 등), 제13조(인문 활동 지원), 제14조(인문주간 운영), 제15조(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미첨부 사유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박종호 의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

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 고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도내 3 / 도외 24)

연 번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1	도 내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9. 7. 9.
2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2017. 6. 13.
3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0. 1. 8.
4	도 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014. 11. 13.
5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7. 14.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019. 8. 28.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013. 3. 11.
8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7. 10. 30.
9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1. 9.
10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9. 3. 15.
11		광주광역시 남구 인문학 진흥 조례	2019. 4. 1.
12		광주광역시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1. 6. 28.
13		울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9. 11. 7.
14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7. 15.
15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2021. 9. 28.
16		남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2. 18.
17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0. 5. 15.
18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9. 30.
19		전라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1. 5. 14.
20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0. 2. 7.
21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2016. 7. 15.
22		남원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1. 3. 26.
23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8. 12. 27.
24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2020. 2. 26.
25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2015. 4. 1.
26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19. 11. 7.
27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2020. 5. 13.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안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3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7.

발 의 자 : 나안수 · 서정진 · 박종호
이현재 · 이복남 의원

1. 제정이유

-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사립 공공도서관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사립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 청문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7조)
- 마.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 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아. 도서관의 책무, 지도감독, 지원금 환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서관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공공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설치기준 등)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물 면적 264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장서 3,000권 이상 및 연간증서 3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열람석 60석 이상의 시설과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청문) 시장이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1. 제5조에 따라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3. 제4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갖춘 도서관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개관, 휴관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운영자 선정과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제14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4.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18조(사용료 등) 사립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 · 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 · 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8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9조 및 제10조의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미첨부 사유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5. 작성자

나안수 의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서관법

[시행 2015. 9. 28.] [법률 제13222호, 2015. 3. 27., 타법개정]

-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0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김영진 ·이복남 의원

1. 개정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 예방대책을 규정함(안 제4조)
- 일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홍보를 규정함
(안 제5조)
-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s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4조(예방대책 실시)

-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야생조류 충돌방지테이프(필름) 부착사업으로 진행
- 2021년 기준 부착비용으로 추계기간동안 일정하다고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579,700	-68,200 (1,000m ²)	-102,300 (1,500m ²)	-136,400 (2,000m ²)	-136,400 (2,000m ²)	-136,400 (2,000m ²)
세입(a)	0	0	0	0	0	0
세출(b)	579,700	68,200	102,300	136,400	136,400	136,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579,700	68,200	102,300	136,400	136,400	136,400
시 비	579,700	68,200	102,300	136,400	136,400	136,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1000m ² 기준	예산액	산출기초(필름기준)	비고
계	68,200		
재료비	44,000	5*5패턴 m ² = 44,000원	
시공비(인건비,장비비)	24,200	인건비 m ² = 16,500원 장비비 1일 550,000원 1일 70~80m ² 부착(평균75m ²) 1000m ² /75m ² =13.3일 14*55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김영진 의원, 동물자원과 야생동물팀장 (협의)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21. 11. 1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348호, 2021. 11. 10., 일부개정]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5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1. 11. 16.

1. 제정이유

- 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 제2장 농촌협약 제도(안 제5조~제6조)
 - 농촌협약 체결 및 대상
 - 추진체계 구축(행정협의회, 전문자문단, 농촌협약협의회 구성·운영)
- 제3장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13조)
 - 위원회 기능(협약에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 세부 계획 변경 및 보완, 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위원 구성(총 20명 이내 : 위원장 - 시장, 위원 - 국·소장 5명, 시의원, 해당 생활권 읍면 주민대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제16조)
 - 센터 기능(농촌협약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마을만들기 및 역량강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등의 지원)

○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제22조)

- 농촌협약 대상 사업 및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 관리위탁 시 경비지원
-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료 면제, 관리위탁 기간, 시설물 이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

○ 제6장 마을만들기사업(안 제23조~제32조)

-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의 지원
-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사업의 대상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신청 및 결정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분석 및 평가, 센터의 운영 및 사업계획,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및 기간연장, 이용료 산정, 위탁 경비의 지원)
- 관리위원회 구성(총 15명 이내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원 - 농업정책과장 1명, 시의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제39조 등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제125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8. 27. ~ 9. 16.)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0.(여성가족과-18966)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 성평등한 추진을 위해 노력

- 본 조례 제정안 제19조는 성별영향평가지표 항목 중 2. **성별특성**에 해당됨. 이에 농촌활성화지원 센터가 사업계획 수립시 수행과정 및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하기 바람.

해당 내용 (법령 제정안)	개 선 안 (법령 수정안)
제19조(기능) ① <u>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수행한다.</u>	제14조(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 발전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u>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8. 25.(농업정책과-10547)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30.(기획예산실-13927)

※ 법제처 입법컨설팅 : 2021. 9. 17.(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68)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25.(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1-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에 따라 농촌 정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목표, 향후 발전 방향과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과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한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및 농촌지역 난개발방지, 주거환경 개선 및 경관 보전 등 농촌 공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인 농촌 공간 정비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농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6.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를 위한 지역 활성화

② 순천시민은 누구나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이 추진하는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협약 제도

제5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 정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 체결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하는 사업
3. 시장이 농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농촌협약의 당사자 간 협의로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체계 구축) ① 시장은 농촌협약에 포함된 정책사업 이행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정책 과제에 따른 부문별 전문가로 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이행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생활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발굴하는 민관 협의채널로서 농촌협약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협약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종합개발계획 등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협약의 세부 계획 변경·보완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협약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자치행정국장
2. 일자리경제국장
3. 시민복지국장
4. 안전도시국장
5. 농업기술센터소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재 읍·면 지역 해당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약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약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협약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협약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약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약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약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등을 협약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협약위원회에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촌재생팀장이 된다.

제4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4조(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 사회 발전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순천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 수행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3. 협약위원회의 운영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5.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6.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련 계획 수립
7.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8. 마을공동체 육성 등 역량강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센터의 구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 활성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제17조(시설물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해당 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

제1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탁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시장이 위탁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관리위탁 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소모성 경비의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이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반환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23조(마을만들기 지원 등)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기본 방향
 2. 센터의 운영
 3.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5.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의 세부 계획
2. 마을만들기사업의 추진 방법
3. 우수마을의 평가
4.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마을만들기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생활 기반 확충
 2. 지역 소득 증대
 3. 지역 경관 개선
 4. 지역 역량 강화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이수한 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마을만들기사업 신청 및 결정 등) ① 마을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마을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주민동의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 신청액 산출 내역의 적정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 여부
 4.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제28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을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의 발전 방향 및 시설물 관련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및 위탁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만들기사업 및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준용)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은 관리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약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2조(간사와 서기)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재생팀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만들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7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위탁시설	시 설 명		면적(㎡)	
	시 설 명		면적(㎡)	
	시 설 명		면적(㎡)	
	시 설 명		면적(㎡)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	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및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위탁시설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시 설 명		면적(m ²)	
위탁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갱신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	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경력 증빙자료			
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순천시장 귀하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일련번호 : 20**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직 업		전화 번호	
	주 소			
이용일시	년 월 일 : 시부터 년 월 일 : 까지 ※ 1인(동일단체) 정기대관 불허			
이용목적 및 내용	목 적	(참여인원 : 명)		
시설이용	시설명			
위와 같이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20** -			
성 명		시 설 물 명	
이 용 내 용			
이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위와 같이 시설물 이용(변경)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뒷면)

시설물 이용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 이용자는 본 시설물의 이용 승인에 따른 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 이용 중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 시설 이용 중이더라도 대관은 즉시 취소(퇴장)됩니다.
2. 이용 당일 **참가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은 이용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행사 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 반입은 **시설물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고, **시설물 대관 전(前) 상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타 시설이용자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란행위(허가시설 이외의 장비 이용) 등을 금합니다.
5. 시설물 내 음식물(음료수, 커피, 빵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용자가 치워야 하므로, 필요한 종량제봉투는 이용자가 준비합니다.
6. 시설물, 물품, 전시물 등 파손 시 **원상복구 후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대관 이용 후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최종 확인을 받고 퇴관**하여야 합니다.
8. 상기 사항을 어길 시 차후 **대관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시설 대관 신청서 작성에 따른 개인정보 기재, 시설 대관 종료 후 시설 파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 등 이용자에게 연락하기 위함
3.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시설 이용일부터 3개월 보관 후 파기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순천시장 또는 관리수탁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마을만들기사업 신청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마을현황	단체명	○○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소재지	ex)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체 활동공간 기재				
	추진위원장	성명 (연락처)	○○○	(H.P : 000-000-0000) (사무소 : 000-0000)		
	참여현황	참여인원	위원장 ○○○외	명	참여가구수	○○가구
주요사업	☐ 문화·복지 ☐ 경관·생태 ☐ 소득·체험	.(사업내용 기술) .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시설사업비		역량강화 사업비	
기대효과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 기간 : 해당 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읍면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인)

순천시장 귀하

I. 사업대상지 개요

1. 마을(지역)현황

- 위 치 : 시 읍·면 리
- 마을연혁, 역사, 지명유래, 행정구역 변천사 작성

* 마을에 의미가 있는 역사, 마을별 연혁, 지명유래 등을 작성

* 각 자연마을의 연혁을 서술하면서 인접한 마을이나 읍면동과의 관계 등을 설명

- 인구(귀농귀촌 포함) 및 농경지 현황

자연 마을명	인구수 (명)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남	여	계	농가	어가	비농어가	계	답	전 (과수원)	임야	기타
마을명	()	()	()	()	()	()						

※ ()는 귀농귀촌 인구수 및 가구 수를 기재

* 자연 마을별로 인구수(남, 여, 귀농귀촌 인구), 가구 수(농가, 비농가), 경작지 현황을 기재

* 마을별로 조사된 기초자료는 마을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보존하여 마을 현황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기입

2. 지역공동체 활동 내역

- 지역공동체 활동 현황

자연 마을명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수	모임횟수	등록일자	주요 활동 내역
○○	영 농 회 청 년 회 부 녀 회	○ ○ 명	○ 회/년(월)		○ 마을의 주요 대소사 결정 내역 - -

* 마을별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공동체 조직의 실질적인 활동 상황을 기술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주요 담당업무	비고 (구성 일자)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담당			- ○○마을 이장(담당업무 ex) 총괄) - ○○마을 부녀회장 - ○○마을 이장(주민제안서 작성)	

* 추진위원회 구성된 경우 직책별로 주요담당 업무를 기입하고 구체적인 조직도 기입

○ 마을만들기 관련 주민교육 실적 : 회 명 ('16 ~ 20년까지)

교육과정명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인 원	비 고
○○ 현장 포럼 ○○마을만들기 교육과정 마을 리더 교육		마을회관 전남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관련 증빙 첨부>

3. 0000년까지 마을사업 추진현황(본사업 관련한)

○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재원 (지원 주체)	주요 사업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연도까지 추진해 온 사업 현황을 기재(예:따순마을만들기 등)

* 사업비 없이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술

○ 문화행사 현황

향토문화축제	시행 월	장 소	축제 주요 내용	주최	방문객 수
○ ○ 축제	(기간: 일)				
○ ○ 행사	(기간: 일)				

* 마을에서 2016년 이후(최근 5년)에 개최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시행 월(기간), 장소, 축제내용, 주최(주관) 및 방문(관람)객 수 등 현황을 기재

II. 마을발전방향

1. 마을발전목표

○ 발전목표 설정 :

* 마을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제시하는 '비전'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발전목표는 지역의 부존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읍·면·동, 시, 도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 계획이 있으면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2. 마을발전방향

○

* 기초생활 기반 확충, 소득증대 및 경관 개선 등 마을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3. 마을 발전계획 수립 여부(수립, 미수립) 표시 :

○ 수립일 :

* 발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수립 일자 기재, 증빙자료(○○마을 발전계획서) 별도 첨부

* 현장 포럼 및 마을회의 등 주민참여 하에 수립된 마을 발전계획

Ⅲ. 사업내용

1. 사업개요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

* 마을만들기 사업의 배경과 목적, 성격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 지역이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 사업장 위치 : 순천시 읍·면 리 번지(대표 번지 기재)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

※ 예시) 담장 정비 구간, 마을회관 리모델링 위치, 도로 확장 구간 등

○ 사업내역 (기능별 사업 내역 구체적 기재)

기능별 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위치 (행정리)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시비	자부담		
1. 기초생활 기반확충	1-①							
	1-②							
	1-③							
	①소계							
2. 지역소득증대	2-①							
	2-②							
	2-③							
	②소계							
3. 지역경관개선	3-①							
	3-②							
	3-③							
	③소계							
4. 지역역량강화	4-①							
	4-②							
	4-③							
	④소계							
합계((①+②+③+④))								

* 동일 또는 연계되는 사업 성격, 동일한 공간 또는 연접한 공간에 계획되는 사업들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표현, 기존의 기능별 사업 구분은 재정별 투자계획에만 표기

* 마을만들기사업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기능별 사업 중 필요로 하는 세부 사업계획

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역량강화

지역경관개선 + 지역소득증대 + 지역역량강화

기초생활기반 확충 + 지역역량강화

2.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1-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1-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 * 동일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등에 대해 기술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 농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강화(커뮤니티 버스 등)
 - 농촌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공동생활 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소득증대

2-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2-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 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예) 소득 기반 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 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 관광 시설(폐교 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 함
- * 지역 소득증대 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수익자(주민)가 100% 부담
 - 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해당 시설 총사업비의 20%를 수익자(주민)가 부담
-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보조금의 2~5%를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

○ 지역경관개선

3-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3-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 정비, 경관 수목 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 마을(권역)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 정비사업 등
-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 쉼터,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 안내판 등 농촌형 공공시설 디자인 적용 등
-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담장 정비는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예 : 슬레이트 정비, 담장 정비, 지붕개량 등)

○ 지역역량강화(S/W)

4-1.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4-2. OO사업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업내용 :

*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교육·훈련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등의 부대 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설 완공 전부터 타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 프로그램 운영(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 건강 체조 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ICT 복지 달력 제작, 글쓰기·독서 교실, 평생 학습 교실 등
- 로컬푸드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3. 향후 시설물 운영(활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프로그램 등 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 및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완료 후 시 지원 불가 원칙

IV. 기대효과 및 유지관리계획

1. 기대효과

○

○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계량 가능한 지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2. 향후 시설물 운영(활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

* 시설물의 관리 및 활용계획(프로그램 등 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유지관리 조직, 지침 등) 및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 완료 후 시 지원 불가 원칙

V. 첨부자료

1. 주민참여 관련 실적(추진위원 구성 명단, 공동체 활동 실적, 주민동의서 등)
2. 마을 발전계획 1부.
3. 농촌 현장 포럼 결과보고서 1부.
4. 토지 사용 승낙서 1부.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농촌협약 대상 사업 시행으로 인해 초기(2023년부터 5년간)에는 세출이 세입보다 많으나 사업 완료 이후 민간자립도가 점차 높아져 세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농촌협약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7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64,374	-3,440	-939	-4,864	-12,239	-18,614	-16,489	-7,789
세입(a)	0	0	0	0	0	0	0	0
세출(b)	64,374	3,440	939	4,864	12,239	18,614	16,489	7,7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7차년도 (2027년)
합 계	64,374	3,440	939	4,864	12,239	18,614	16,489	7,789
국 비	31,302	42	210	1,710	6,210	10,710	9,210	3,210
시 비	33,072	3,398	729	3,154	6,029	7,904	7,279	4,57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농촌협약 대상 사업 추진(농촌협약 체결 시 2023년~2027년 사업 추진)
 - 사업비 : 42,500백만원(국비 30,000백만원, 시비 12,500백만원)
- 농촌활성화지원센터(2022년 설치 운영 예정) : 1,614백만원
 - 인건비 : 7명 × 6년 × 35백만원 = 1,470백만원
 - 일반운영비 : 12월 × 12백만원 = 144백만원
-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전환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 17,680백만원
 - 예비단계 : 10개마을 × 6년 × 5백만원 = 300백만원
 - 진입단계 : 4개마을 × 5년 × 500백만원 = 10,000백만원
 - 발전단계 : 1개마을 × 4년 × 1,000백만원 = 4,000백만원
 - ※ 21년 사업 : 진입단계(5개소, 2,330백만원), 발전단계(1개소, 1,050백만원)
 - 역량강화사업 : 1,86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6년 × 300백만원 = 1,800백만원
 - ※ 21년 역량강화사업 : 60백만원(국비 42백만원, 시비 18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 운영비 12월 × 5년 × 12백만원 = 720백만원(2022년 12월 말 준공 예정)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농업정책과 과장 박주봉 (☎ 749-8666)
 농촌재생팀장 조상옥 (☎ 749-8825)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제정이유

-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위치, 정의(안 제1조~제3조)
- 시설 및 기능(안 제4조)
- 운영시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1. 9. 30. ~ 10. 20.(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자 :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 제출일 : 2021. 10. 14.
 - 제출내용 및 검토결과

구 분	의 건	검 토 결 과
기능조정	▸ 위탁소⇒입양홍보실	▸ 수용
이용제한	▸ 생리중인 반려동물(암컷) 신설	▸ 제8조제2항제3호 내용에 포함되므로 미반영
이 용 료	▸ 위탁관련 이용료 삭제 및 수강료·체험학습비 등에 이용료 포함 책정	▸ 수용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29.(여성가족과-1600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8. 26.(기획예산실-1220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9. 30.(순천시 공고 제2021-2210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5.(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순천시가 설치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이하 “반려동물문화센터”라 한다)는 순천시 조곡동 131-5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문화센터는 교육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반려동물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 및 훈련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3. 반려동물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일자리 교육 실시
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반려동물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반려동물문화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 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이용조건 등) ①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2.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이용목적과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

1. 이용료

구분	내용	대상		금액(원)	비고
반려동물 동반고객	1일 이용	사람	1명	3,000	
			추가 1명당	2,000	
		반려동물		5,000	1두
	연간 이용	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		200,000	
		1명 또는 1두 추가 시		50,000	

2. 수강료 · 체험학습비 등

- 교육 대상 · 내용 · 시간 등에 따라 이용료 포함한 금액으로 별도 책정

[별표 2]

이용료 감경 기준

구분	내용	기준	감경율(%)	비고
감경 대상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50	관련 증명서(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	1두	50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

1.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환불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불
3.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불 기준

가. 1일 입장료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	입장료 전액 환불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나. 연간이용료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불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불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불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결제 후 이용 전	이용료 전액 환불 및 이용료의 10% 배상
	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불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불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20% 배상

다. 체험 학습비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시작 전 취소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체험시작 후 취소	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체험 취소 또는 연기	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체험 30분 이상 지연	체험학습비의 10% 환급

라. 교육 수강료

1) 강습기간 : 1월 이내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강습기간 : 1월 이상

구분	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개시 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

2. 비용추계의 전제

○ 반려동물문화센터 이용료 등 수입 및 시설 운영비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16,906	1,757	3,620	3,730	3,841	3,958
세입(a)	3,351,059	348,406	717,716	739,247	761,424	784,266
세출(b)	3,334,153	346,649	714,096	735,517	757,583	780,308

※ 2022년은 6개월분 추계(반려동물 문화센터 2020. 6월 준공 예정)

※ 2023년 이후는 1년간 비용추계에 물가상승률 3% 적용하여 추계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계	3,351,059	348,406	717,716	739,247	761,424	784,266
이용료	3,029,755	315,000	648,900	668,367	688,418	709,070
임대수입	321,304	33,406	68,816	70,880	73,006	75,196

3-2. 세출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계	3,334,153	346,649	714,096	735,517	757,583	780,308
인건비	1,816,117	188,820	388,969	400,637	412,656	425,035
경상경비	1,271,280	132,174	272,278	280,445	288,859	297,524
공과금	122,180	12,703	26,168	26,953	27,762	28,594
일반관리비	124,576	12,952	26,681	27,482	28,306	29,15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3,334,153	346,649	714,096	735,517	757,583	780,308
시 비	3,334,153	346,649	714,096	735,517	757,583	780,30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 2022년 6개월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구성비율	산출기준
지출	인건비	관리직 (a)	116,820	33.69%	
		교육강사 수당	72,000	20.77%	
		소 계 (A)	188,820	54.47%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32,174	38.13%	인건비의 70%
		소 계 (B)	132,174	38.13%	
	공과금	관리직 사회보험료 (b)	12,703	3.66%	1,814,714원 × 7명
		소 계 (C)	12,703	3.66%	
지출 합 계 (D)			333,697	96.26%	[A + B + C]
일반관리비 (E)			12,952	3.74%	[(a + b) × 10.0%]
총 세출 (F)			346,649	100.00%	[D + E]
수입	입장료·이용료		315,000		
	카페테리아 임대 수입		33,406		
	총 세입 (G)		348,406	100.00%	
총 세출 및 총 세입 차액			1,757		[G - F]

○ 인 건 비(6개월) ⇒ 188,820천원

구 분		인원	단가(천원/월)	금액(천원/6개월)	비 고
합 계		13		188,820	
관 리 직	소계	7		116,820	
	공무원(6급)	1	4,500	27,000	현재 반려산업팀(2명) 포함
	공무원(7급)	1	3,700	22,200	
	공무원(8급)	2	2,500	30,000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3	2,090	37,620	청소·환경정비 포함
교육강사수당		4	2,000	48,000	2팀×2명×100,000원×20일×6월
		2	2,000	24,000	2팀×2명×100,000원×10일×6월

○ 입장료·이용료(6개월) ⇒ 315,000천원

▶ 순천시민 : $280,000\text{명} / 4 \times 50\% \times 8,000\text{원} / 2 = 140,000\text{천원}$

▶ 관 광 객 : $5,000,000\text{명} / 4 \times 3.5\% \times 8,000\text{원} / 2 = 175,000\text{천원}$

○ 카페테리아 임대(6개월) ⇒ 33,406천원

▶ 사용료 : $8,000\text{백만원} \times 20.18\text{m}^2(\text{임대면적}) / 2,658\text{m}^2(\text{연면적}) / 2 \approx 30,369\text{천원}$

▶ 부가가치세 : $30,369,000\text{원} \times 10\% = 3,036,900\text{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과장	탁종수 (☎ 749-8784)
		반려산업팀장	최윤경 (☎ 749-4467)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7호
----------	--------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 제 출 일 : 2021. 11. 16.

1. 제정이유

-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농업 부가가치 극대화로 지속가능한 농 식품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중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제2조)
- 사업과 재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제4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지역 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제10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0. 19.(여성가족과-2167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0. 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0. 18.(기획예산실-148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28.(순천시 공고 제2021-2288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5.(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 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상품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
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발효센터”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회계년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내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조치 요구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재단이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농가 지원) 재단은 생산원료 등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순천시에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립하는 재단법인에 남해안권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2,852	-808	-688	-552	-466	-338
세입(a)	2,595	69	425	575	698	828
세출(b)	5,447	877*	1,113	1,127	1,164	1,166

※1차년도 세출구성 = 857백만원 + 자본금 2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5,447	877	1,113	1,127	1,164	1,166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5,447	877	1,113	1,127	1,164	1,166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인 건 비	3,910	604	755	831	850	870
운 영 비	297	53	67	58	61	58
사 업 비	1,220	200	291	238	253	238
자 본 금	20	20	-	-	-	-
합 계	5,447	877	1,113	1,127	1,164	1,166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최신철(☎ 749-8761)

발효산업팀장 박근숙(☎ 749-877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숙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5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6.

장숙희 · 정홍준 · 오광묵

발 의 자 : 이현재 · 이복남 · 서정진

오행숙 · 박계수 ·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민간건축물 안전사고 증가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추가 (안 제37조)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추가 (안 제37조의2)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관련 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 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관련 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신 설></u>	제37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22. 1. 1.시행) :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개정 동향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 대상을 지역별 허가면적(5개년 평균) 또는 노후건축물 수준이 전국 대비 상위 30% 이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 추가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4. 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고용에 필요한 비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445,140	89,028	89,028	89,028	89,028	89,028
세입(a)	-	-	-	-	-	-
세출(b)	445,140	89,028	89,028	89,028	89,028	89,0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비	445,140	89,028	89,028	89,028	89,028	89,02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인건비	445,140	89,028	89,028	89,028	89,028	89,028

○ 산출근거

【 전문인력 】 89,028천원

■ (인건비) 7급(상당) 2인 * 44,514천원 = 89,028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안전도시국 건축과 과장 조용병 (☎ 749-6202)

팀 장 신범식 (☎ 749-6385)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정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4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6.

발 의 자 : 정홍준 · 김미연 · 이복남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 2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 ~ 8조)
-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 (안 제9 ~ 14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운행 구간 및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지침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4. 30.	
2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1. 8.	
3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	교통행정과
4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8.	도시교통국
5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4.	도시교통과
6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3. 25.	안전도시국 교통과
7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6. 10.	도로과
8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2021. 2. 25.	
9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10.	교통행정과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2021. 6. 1.	안전총괄과
11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23.	교통행정과
12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0.	교통과
13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26.	안전생활국 교통 행정과
14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3.	교통행정과
15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0.	도로과
16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21.	교통정책과
17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2.	교통시설담당
18	단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0. 16.	민원과
19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14.	교통과
20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10.	교통정책과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 례	2021. 8. 11.	교통행정과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2020. 6. 30.	교통과
23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2021. 2. 19.	
24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 본 조례	2020. 10. 19.	교통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7. 12.	교통행정과
26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 11. 6.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15.	교통행정과
28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5.	교통행정과
29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3. 31.	교통행정과
30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2020. 2. 7.	자동차관리계
31	부산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7.	교통행정과
3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5. 20.	교통행정과
3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7.	교통행정과
3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19.	교통행정과
35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1. 7.	교통정책과
36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18.	교통행정과
3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0. 28.	교통행정과 보행 자전거팀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9.	교통행정과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13.	교통지도과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18.	교통행정과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1. 5.	교통행정과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2021. 5. 10.	교통행정과
4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1.	교통행정과
44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2. 25.	교통행정과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7. 15.	교통행정과
46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	2020. 7. 9.	교통행정과 보행 자전거팀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4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0. 11. 2.	주차지원과
48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12.	친환경교통팀
49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8.	철도과
50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9. 15.	교통행정과
51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31.	교통정책과
52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7. 8.	교통행정팀
53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0.	도로과
54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9. 29.	이모빌리티산업과
55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5. 31.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56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8. 12.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57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20. 7. 9.	교통기획과
58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30.	도로과
59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2019. 12. 30.	
60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21.	교통정책과
6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0. 12. 24.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62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63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9.	자전거정책과
6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0.	교통정책과
65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6. 4.	교통행정팀
66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5. 31.	교통행정과
67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1. 6. 29.	미래도시국 건설교통과
68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0. 10. 12.	교통정책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69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4. 15.	건설도로과
70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2021. 6. 11.	교통정책과
71	춘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생활교통과
72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 12. 31.	교통정책과
73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020. 4. 1.	교통정책과
74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0. 9. 29.	
75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3. 16.	건설과
76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2021. 5. 28.	도로관리과
77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21. 2. 9.	교통지원과

참고 3

기타사항

□ 관내 대여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운영 대수	영업소 주소	운영 방식	안전모 구 비여부	보험 가입 여부
계	5	950				
1	지쿠테	300	남산로153-1	순천지점 운 영	○	○
2	쌍쌍	50	조례못등길 55	순천지점 운 영	X	○
3	디어	150			○	○
4	이브이패스	50	북문길 183	순천지점 운 영	○	○
5	스윙	400	여수시 봉계동	본사직영	X	○

□ 타 지자체 사례(주차공간) 및 우리 시 설치 예정지

- 서울시 서초구 : 노면 표시형 주차구역 설치(2020. 2.)
- 서울시 송파구 : 거치대형 주차구역 설치(2020. 10.)



노면표시형(서울 서초구)



거치대(서울 송파구)



온누리자전거 보관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6조(사업추진 등)

-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세입(a)	-	-	-	-	-	-
세출(b)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150,000	-	30,000	30,000	40,000	50,000

○ 산출근거

【주차공간 조성】 20,000천원

- (시설비) 50개소 * 400천원 = 20,000천원

【이용안전수칙 홍보활동】 10,000천원

- (홍보활동) 2,000천원/회 * 5회 = 1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안전도시국	교통과	과 장	장기석 (☎ 749-5533)
		팀 장	박숙희 (☎ 749-5900)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92호
----------	--------

발의연월일 : 2021. 11. 18.

발 의 자 : 이복남 · 김미애 · 서정진
김미연 · 오행숙 ·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의 지정·보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천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양성을 말한다.
3. “생태계서비스”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순천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제8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보전 관리해야 한다.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 일시
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지원 등) ①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 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의 지정·보전 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시 및 읍·면·동의 상징종(象徵種)(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깃대종의 주요서식지를 상징생태계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복원 등 보전계획
4.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 방안 수립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및 간행물 발간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순천시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13조(재정지원 등)

- 시장은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생물다양성 관리(생태계서비스지불제)
- 습지보호지역(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 사업
- 갯대종 발굴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5,038,933	-2,368,461	-3,047,618	-3,047,618	-3,047,618	-3,527,618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5,038,933	2,368,461	3,047,618	3,047,618	3,047,618	3,527,61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5,038,933	2,368,461	3,047,618	3,047,618	3,047,618	3,527,618
국 비	7,344,000	944,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도 비	1,330,000	21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시 비	6,364,933	1,214,461	1,167,618	1,167,618	1,167,618	1,647,61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2,368,46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운영비	6,340	협의회100천원*13명*3회 현황도면 등 2,440천원	
벼 미수확준치사업	700,000	700,000천원*1식	61ha
벼짚준치사업	293,660	293,660천원*1식	398ha
습지보호지역(동천 하구) 훼손지 복원	920,000	920,000천원*1식	10ha
갯대종 발굴 선정 용역	75,037	75,037천원*1식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373,424	373,424천원*1식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이복남 의원,

생태환경과 생태환경팀장, 순천만보전과 순천만보전팀장 (협의)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 ② (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식물 또는 생

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 9. (생략)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 ⑦ (생략)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49호, 2020. 6. 2., 일부개정]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71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 ⑤ (생략)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2.]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03호, 2020. 3. 2., 제정]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의 총체적 운영관리와 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계적인 조례 구성을 위한 대분류(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운영, 제3장 안전문화대상 운영)
-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제28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 폐지(부칙)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15. ~ 1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30.(여성가족과-2026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7.(기획예산실-1346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15.(순천시 공고 제2021-232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12.(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 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로 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

제6조제2항 중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운영” 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문화 진흥관련” 을 “안전문화 진흥 관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 을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를 “(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 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이 임명하는” 을 “순천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업무 팀장” 을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3장(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안전문화대상 운영

제16조(안전문화대상) 시장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이하 “안전문화대상”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상 부문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제19조의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상 시기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안전문화대상 시행 요강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23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단체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에 수상후보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현지조사 등) ① 시장은 후보가 제출한 공적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상후보 선정) 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후보를 선정한다.

제26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지침상의 후보자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수상대상 결정 및 시상) ① 수상대상은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대상의 시상은 시장이 한다.

제28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와 수상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하거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정할 수 있다” 를 “정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2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 ----- -----.
제5조(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포상</u>
8. (생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위탁운영) ① (생략)	제6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u><신 설></u>	<u>제2장 안전문화진흥협의회 운영</u>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

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의 안전
문화 진흥관련 국·소장으로 한
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
다.

제11조(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제13조(안전문화진흥 실무협의회)

①·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 구성하
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전
문화 진흥 관련 -----
-.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밖에 -----

--

⑤ -----

---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

제11조(협의회 위원장 등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문화진흥 실무협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략)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생략)

④ (생략)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순천시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

⑥ (현행과 같음)

제3장 안전문화대상 운영

제16조(안전문화대상) 시장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이하 “안전문화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시상 부문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제19조의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상 시기 등) ① 안전문화 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안전문화대상 시행 요강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

<신 설>

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안
전문화대상 수상후보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
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 설>

제2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결
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
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
가 지명한다.

<신 설>

제23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신 설>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단체 : 접수 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 (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에 수상후보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현지조사 등) ① 시장은 후보가 제출한 공적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수상후보 선정) 위원회는 제 23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 후보를 선정한다.

제26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지침상의 후보자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수상대상 결정 및 시상) ① 수상대상은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대상의 시상은 시장이 한다.

제28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와 수상 단체에 대하여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하거나 안전문화훈

<u>제1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u>동 추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29조(시행규칙)</u> ----- <u>필요한</u> ----- <u>정한다.</u>
---	--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5.07.30 조례 제1533호
(일부개정) 2018.10.01 조례 제1921호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2에 따라 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문화 진흥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에 미치는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4. “종합안전인증센터”란 안전관련 교육, 체험, 실습, 이수과정을 종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5.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지역사회 구성원”이란 시민을 포함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관·단체의 소속원과 일시적으로 시내에 체류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안전인증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안전교육 생활화 지원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활용·공개
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
8.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대학교, 법인·단체에 시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안전문화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안전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계획 및 발전 방안

2.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3.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
4. 민·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의 안전문화 진흥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의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위원의 신분변동,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안전문화진흥 실무협의회) ①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안전문화진흥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협의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안전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01>
- ⑥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533호, 2015.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

(제정) 2019.06.10 조례 제200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문화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이하 “안전문화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부문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제5조의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상 시기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안전문화대상 시행 요강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별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접수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등) ① 시장은 후보가 제출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후보 선정)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후보를 선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한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지침상의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수상대상 결정 및 시상) ① 수상대상은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대상의 시상은 시장이 한다.

제14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 및 단체에게는 정부포상 후보 추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09호, 201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11. 16.

1. 개정이유

- 납입고지 방법,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종류에 따른 용어정비(안 별표3)
 - “ 사회복지수용시설 ” → “ 사회복지생활시설 ”
- 납입고지 방법 다양화로 민원편의 제공(안 제37조제1항)
 - 수도사용자등이 동의 할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
- 수도요금 등의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4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수정 등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수도법」 제38조 및 제72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3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9. 27. ~ 10. 1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7.(여성가족과-19603)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8. 30.(기획예산실-12380)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24.(순천시 공고 제2021-219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5.(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분기하여”를 “갈라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요금의 납입고지는 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중전의 제9호) 중 “지역에 대하여” 를 “지역 :” 으로, “금액을 감면한다.” 를 “금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점검,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 호당 200원(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20(다만,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 : 피해발생 전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일반용 최저단가 적용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

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일반
반용 또는 옥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9.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로서 수도 계량기를 단독으
로 사용하는 경우 : 최대 8만 원의 범위에서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10.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 용수 :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전
체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
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금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동일한 요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사비 기타” 를 “공사비, 그 밖에” 로 한다.

제44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9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49조의2 본문 중 “수도요금 기타” 를 “수도요금, 그 밖의” 로 한다.

제50조 전단 중 “규정에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별표 3 구분내용란 제3호 중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사회복지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u>분기하여</u>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1. ----- ----- ----- - <u>갈라져</u> ----- -----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한 건물에 <u>수개</u> 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u>여러 개</u> ----- ----- ----- ----- -----.
③·④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0조(신고) ① ----- -----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
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 7. (생략)

② (생략)

제37조(납입고지) ① 요금은 납입고
지서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생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

2.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납입고지) ① 요금의 납입고
지는 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수도
사용자등이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1.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
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 호당 200
원(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
정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

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점검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표8)

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실이 없는 지하누수로 발견이 곤란한 때(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다만,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 가정용 3세제곱미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20(다만,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감면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5. 제4호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신 설>

<삭 제>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 일반용 최저단가 적용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일반용 또는 옥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

9. 일반음식점 중 시장이 지정하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하여 피
해발생 전 정상사용 3월 평균치
를 초과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면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용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
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옥탕용 사용요
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한
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는 모범업소로서 수도 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 최대 8
만 원의 범위에서 사용요금의 10
0분의 50

5. -----

----- 지역 : -----

----- 금
액

10.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
용수 :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
요금 전체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제8
호, 제9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

<신 설>

<신 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 14. (생 략)

②·③ (생 략)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

계로 보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금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동일한 요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

--.

1. ----- 공사비, 그 밖
에 -----
-----.

2.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

- 해당 -----
-----.

제49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

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제49조의2(소멸시효)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 2. (생략) 3.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u>사회복지수용시설</u>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 2. (생략)
욕탕용	(생략)
산업용	(생략)

-- 그 밖의 -----

-----.

-----.

제49조의2(소멸시효) -----
수도요금, 그 밖의 -----
-----.

-----.

제50조(권한의 위임) ----- 따
른 -----

-----.

[별표 3]

업 종 별 구 분 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 2. (현행과 같음) 3. ----- ----- <u>사회복지생활시설</u> -----
일반용	1. · 2. (현행과 같음)
욕탕용	(생략)
산업용	(생략)

[별표 8]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

<삭 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정) 1995.01.10 조례 제 104호
(일부개정) 1997.07.14 조례 제 297호
(일부개정) 1997.10.02 조례 제 317호
(일부개정) 1998.08.10 조례 제 375호
(일부개정) 1999.01.15 조례 제 407호
(일부개정) 1999.10.25 조례 제 470호
(일부개정) 2000.05.10 조례 제 503호
(일부개정) 2000.06.23 조례 제 536호
(일부개정) 2001.01.15 조례 제 572호
(일부개정) 2003.05.07 조례 제 681호
(일부개정) 2007.04.30 조례 제 926호
(일부개정) 2008.03.31 조례 제 991호
(일부개정) 2008.07.28 조례 제1033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02.16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2.02.06 조례 제1266호
(일부개정) 2012.03.26 조례 제1270호
(일부개정) 2013.04.01 조례 제1337호
(일부개정) 2013.04.30 조례 제1345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1513호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570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622호
(일부개정) 2016.11.10 조례 제1696호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860호 수도법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1961호
(일부개정) 2020.04.07 조례 제2119호
(일부개정) 2021.05.07 조례 제22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6, 2013.04.01, 2016.11.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도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9.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하는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목개정 2012.03.2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3.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999.10.25>

④ <삭제 1999.10.25>

⑤ 시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3.26]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개정 2012.03.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3.26>

-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 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7.07.14, 1999.10.25, 2009.01.09, 2012.03.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자

② <삭제 2015.05.01>

③ <삭제 1997.07.14>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별표 7에 해당하는 통·반내의 가정용 신설급수공사(택지개발지역·공동주택 제외)는 대지경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계량기,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3.05.07, 2007.04.30, 2012.03.26, 2013.04.01, 2015.05.0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들이 진다. <개정 2012.03.26>

③ 공동 주택은 주 계량기만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05.07, 개정 2012.03.26>

④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대지내의 관로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3.05.07, 2012.03.26>

[제목개정 2012.03.2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9.10.25>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입)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1999.10.25, 단서 개정 2003.05.07, 개정 2012.03.26, 2015.10.01>

② 제1항의 공사비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 확인 및 납부 독려하여야 하며, 납기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25, 2003.05.07>

③ 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9.10.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제목개정 1999.10.25]

제14조 삭제 <2013.04.30>

제15조(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

간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가압장과 공동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외에 설치한 가압장은 수혜자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 운영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3.04.01>

③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3.26>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들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3.04.01>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03.26>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7.07.14>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3장 급 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3.26>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신청자가 정한다. 다만, 본인의 토지 이외의 장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05.01>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2018.12.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0.06.23>
7. 제29조제2항의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돗물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② 수도 사용자들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07.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들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삭제 2012.03.2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를 중지한 경우 사용 중인 급수전은 별표 6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의하여 과징한다. <단서신설 1999.01.15, 개정 2012.03.2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2.03.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 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납부)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07.14>

② 수도사용자들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고지서·영수증 항목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03.26>

[제목개정 2012.03.26]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6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01.15, 2003.05.07, 2012.03.26>

② 면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중 동지역의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03.05.07, 개정 2012.03.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3.05.07, 2012.03.26, 2018.12.26>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사용수량을 다음 납기분 사용료로 조정고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12.03.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2018.12.26>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2.03.26>

1.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수북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회전한 이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07.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2.03.26>

[제목개정 1997.07.14]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05.07>

제34조 <삭제 1999.01.15>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07.14>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들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1.15, 2003.05.07, 2016.11.10>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까지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7조(납입고지) ①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8.08.10, 2012.03.26>

② <삭제 1997.07.14>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입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1998.08.10>

[제목개정 1998.08.10]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납입) ① 시장은 그 밖의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2.03.26>

② 제1항의 납입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5>

[제목개정 1999.10.25]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07.14, 2003.05.07, 2012.03.26>

1. 제8조 제1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7,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9,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3조 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01.15, 2003.05.07, 2012.02.06, 2012.03.26, 2013.04.01, 2015.10.01, 2015.12.31, 2016.11.10>

1.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표8)
 - 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 다.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5. 제4호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개정 2020.4.7.>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하여 피해발생 전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용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2020.4.7.>

제5장 관 리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들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목개정 2012.03.26]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 사용자들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0.06.23, 2012.03.26, 2015.10.01>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1997.07.14>
 9. <삭제 1997.07.14>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 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05.07>
-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3.04.01>

[제목개정 1997.07.14]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9.01.09, 2012.03.26>

② 별표 5에 의한 1개의 위반행위가 제1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부담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03.26>

[제목개정 2012.03.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05.01.>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6>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2.03.26, 2018.12.26>

제49조의2(소멸시효)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03.26, 2018.12.26>

[본조신설 2003.05.07]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01>

부칙 <조례 제10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승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7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7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5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7호, 1999.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0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호, 2000.05.10>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3.04.30>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01.01.15>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1호, 2003.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6호, 2007.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08.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08.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0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2.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제6호 및 제7호는 201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13.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3.04.30>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적용은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6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2018.0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2018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00% 도달하게 되어있으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율 불합리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므로, 업종별 요금표 재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별표2의 2018년도분 요금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요금은 2017년도분 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 요금표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 업종별 구분표 적용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9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7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 : 2021. 11. 16.

1. 개정이유

- 2006년 이후 15년째 동결된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거비를 시민부담 없이 인상하여 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락된 “호” 조정(안 제21조제1항)
 - 제4호~제6호 → 제3호~제5호
- 분뇨 처리비 납부관련 항목 삭제(제27조제1항제3호)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수정(안 별표 6)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수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0. 5. ~ 10. 2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28.(여성가족과-2006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0. 1.(기획예산실-140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0. 5.(순천시 공고 제2021-2270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11. 5.(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2. (생략) 4.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 2. (생략)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u>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처리비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표(제27조 제1항제1호)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14,400원	1,600 원	16,0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440원	160원	1,600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14,400원	1,600 원	16,0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440원	160원	1,60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신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 제1항제1호)

□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ℓ 당	16원	-	16원

2. <삭제>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

※ <삭제>

※ 타 시군에서 수집·운반된 분뇨를 순천시에서 처리할 경우 처리비(수집·운반 수수료의 10%)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27조 3항 분뇨처리에 관한 처리비(세입감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성자

○ 하수도과 과장	안동훈(☎ 749-6445)
위생처리팀장	김태균(☎ 749-6538)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정) 1995.01.10 조례 제 108호
(전문개정) 1997.10.02 조례 제 324호
(일부개정) 1999.08.28 조례 제 449호
(일부개정) 2000.06.23 조례 제 537호
(일부개정) 2001.01.15 조례 제 573호
(일부개정) 2004.11.06 조례 제 754호
(일부개정) 2005.05.21 조례 제 792호
(일부개정) 2006.06.30 조례 제 874호
(일부개정) 2008.03.31 조례 제 992호
(전문개정) 2008.07.28 조례 제1031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02.16 조례 제1076호
(일부개정) 2013.04.01 조례 제1338호
(일부개정) 2014.07.31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1514호
(일부개정) 2015.10.01 조례 제1571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623호
(일부개정) 2016.11.10 조례 제1697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838호 하수도법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86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1962호
(일부개정) 2019.11.12 조례 제2070호
(일부개정) 2020.04.07 조례 제2120호
(일부개정) 2020.11.18 조례 제22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4.01, 2015.05.01, 2017.12.29, 2020.11.1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15.05.01>

제6조 <삭제 2015.05.01>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017.12.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2017.12.29>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12.29>

제3장 <삭제 2015.10.01>

제9조 <삭제 2015.10.01>

제10조 <삭제 2015.10.01>

제11조 <삭제 2015.10.01>

제12조 <삭제 2015.10.01>

제4장 배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사시행) ①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는 시장 또는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영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05.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④ 제1항의 대행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1>

⑤ <삭제 2015.05.01>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5장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0.11.1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개정 2013.04.01> <삭제 2015.05.01>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04.01>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04.0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 가.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삭제 2017.12.29>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04.01, 2019.11.12>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급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급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급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 라.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별건축물은 정화조 설치비용의 일부를 차감 할 수 있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급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제2호 라목에 따른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과 함께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고지한 단위단가 및 산정기준으로 확정 부과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부과한다. <전부개정 2020.06.30>

나. 영업신고·등록 등 개별법에 의한 즉시민원 처리의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전부개정 2020.06.30>

다.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승인(준공) 전까지로 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사용승인(준공검사)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 수리 전으로 한다. <신설 2020.06.30>

라.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06.30>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7.31>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31>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퍼센트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제21조제1항제6호를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30>

제24조(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 시장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시기 도래 15일전에 청소기간, 청소업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청소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청소 촉구통지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의 송달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에는 시장직인을 날인하여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우송엽서 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적정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26조에 의거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법에 정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 기간은 2년간으로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시설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처리비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4.7>
5.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4호에서 이동 2020.4.7>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신설 2013.04.01, 개정 2020.4.7>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04.01, 2015.12.31, 2020.11.18>

제2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020.11.18>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1.18>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8>

제30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정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1.10>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일

(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까지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총당 및 환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정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32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

2. 제1호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

[본조신설 2020.11.18]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4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4.01, 201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영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7조(이의제기 등)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6>

[제35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8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04.01>

[제36조에서 이동 2020.11.18]

제3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로 귀속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0.11.18]

제4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0.11.18]

제7장 보칙

제4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에게 위임 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삭제 2017.12.29>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1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39조에서 이동 2020.11.18]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3.04.01, 2018.12.26, 2020.11.18>

[제40조에서 이동 2020.11.18]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01>

[제41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조례 제1031호, 2008.0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 체결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3.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14.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5.10.01>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16.11.10>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1호, 2018.0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2018년 하수도 일반 사용료 누진을 불합리한 부분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수도 사용료 재검토 후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별표1의 2018년도분 사용료 인상은 유예하고, 2018년도분 사용료 적용은 2017년도분 요율표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62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적용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70호,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0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2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4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